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6년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I. 제안이유

2015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함.

II. 주요내용

1.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합 계	471,117,492,757	477,191,450,207	366,730,607,944	110,460,842,263
일반회계	376,828,767,567	382,166,217,453	299,637,323,701	82,528,893,752
특별회계	94,288,725,190	95,025,232,754	67,093,284,243	27,931,948,511

2. 다음연도 이월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다음연도 이월내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10,460,842,263 (1,891,877,000)	42,555,794,448 (1,391,877,000)	4,448,119,050	42,506,361,760 (500,000,000)	2,281,595,472	18,668,971,533
일반회계	82,528,893,752 (1,891,877,000)	38,752,449,578 (1,391,877,000)	4,321,349,370	20,033,664,080 (500,000,000)	2,228,262,672	17,193,168,052
특별회계	27,931,948,511	3,803,344,870	126,769,680	22,472,697,680	53,332,800	1,475,803,481

Ⅲ. 결산개요

1.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합 계	471,117,492,757	477,191,450,207	366,730,607,944	110,460,842,263
일반회계	376,828,767,567	382,166,217,453	299,637,323,701	82,528,893,752
특별회계	94,288,725,190	95,025,232,754	67,093,284,243	27,931,948,511

2.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471,117,492,757	484,508,195,097	477,191,450,207	7,316,744,890
일반회계	376,828,767,567	388,350,758,728	382,166,217,453	6,184,541,275
특별회계	94,288,725,190	96,157,436,369	95,025,232,754	1,132,203,615

- 세입결산액은 477,191,450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1.3%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5%이며, 미수납액은 7,316,745천원으로 이중 결손처분 1,125,73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6,191,013천원임. 전년도 결산대비 24,723,252천원이 증가 하였음.

3.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471,117,492,757	366,730,607,944	91,402,152,258 (1,891,877,000)	12,984,732,555
일반회계	376,828,767,567	299,637,323,701	64,999,340,028 (1,891,877,000)	12,192,103,838
특별회계	94,288,725,190	67,093,284,243	26,402,812,230	792,628,717

- 세출결산액은 366,730,608천원으로 예산현액의 77.8%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1,402,15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2,984,733천원임. 전년도 결산대비 2,834,193천원이 감소 하였음.

4.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진부도서관 RFID 구축 등 총 21건에 613,150천원을 전용하였음.

5. 예비비 지출

-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951,122천원으로 “봄 가뭄대책 영농지원사업”의 2건 540,650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12,206천원을 지출하고 300,000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8,44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6. 재무제표

(단위 : 원)

회계별 구분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자 산	부 채	순자산	수 익	비 용	운영차액
일반회계 (A)	2,323,280,162,069	49,318,441,153	2,273,961,720,916	318,580,075,209	250,873,353,705	67,706,721,504
공기업 특별회계 (B)	195,669,225,226	347,444,550	195,321,780,676	5,434,603,749	10,712,381,223	-5,277,777,474
기타 특별회계 (C)	268,581,255,090	1,710,613,433	266,870,641,657	36,221,075,209	19,077,745,186	17,143,330,023
기금(D)	19,642,007,381	8,016,253,739	11,625,753,642	1,875,926,280	776,276,302	1,099,649,978
내부거래 (E)	-97,194,115,739	-15,916,253,739	-81,277,862,000	-11,858,931,390	-11,858,931,390	0
합계 (A+B+C +D-E)	2,709,978,534,027	43,476,499,136	2,666,502,034,891	350,252,749,057	269,580,825,026	80,671,924,031

7. 기금결산

(단위 : 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17,397,700,654	994,640,764	1,889,958,884	895,318,120	18,392,341,418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12,511,431	1,396,356	46,868,776	45,472,420	113,907,787
평창군체육진흥기금	3,221,347,770	268,431,647	280,431,647	12,000,000	3,489,779,417
평창군통합관리기금	8,201,085,494	-32,793,461	164,757,929	197,551,390	8,168,292,033
평창군사회복지기금	4,909,740,697	756,841,249	847,329,649	90,488,400	5,666,581,946
평창군재난관리기금	953,015,262	764,973	550,570,883	549,805,910	953,780,235

- 2015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7,397,701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889,959천원이고, 사용액은 895,318천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8,392,342천원임.

8. 채권 및 채무 결산

【채권결산】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합 계	5,761,968,807	104,534,466	606,360,054	5,260,143,219
일반회계	4,426,798,615	37,181,838	352,762,543	4,111,217,910
특별회계	462,417,800	-	184,100,632	278,317,168
기 금	872,752,392	67,352,628	69,496,879	870,608,141

-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5,761,969천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104,534천원이며, 606,360천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260,143천원으로 전년 대비 501,826천원이 감소 하였음.

【채무결산】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계	17,371,000,000	7,382,000,000	10,000,000,000	2,618,000,000	24,753,000,000
일반회계	17,371,000,000	6,382,000,000	9,000,000,000	2,618,000,000	23,753,000,000
특별회계	0	1,000,000,000	1,000,000,000	0	1,000,000,000

-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7,371,000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0,000,000천원을 발행하고 2,618,000천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753,000천원으로 전년대비 7,382,000천원이 증가 하였음.

9.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공유재산】

(단위 : 원)

구분 용도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합계	2,302,822,064,717	121,171,735,217	25,173,268,386	2,398,820,531,548	
행정재산	계	2,248,823,231,678	120,420,142,800	24,561,778,649	2,344,681,595,829
	공용재산	186,609,320,982	4,861,063,582	1,826,232,494	189,644,152,070
	공공용재산	2,055,627,655,404	115,559,079,218	22,735,546,155	2,148,451,188,467
	기업용재산	6,563,554,292	0	0	6,563,554,292
	보존용재산	22,701,000	0	0	22,701,000
일반재산	53,998,833,039	751,592,417	611,489,737	54,138,935,719	

-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2,302,822,065천원에서 당해연도에 566,637.61m²에 121,171,735천원이 증가하고, 211,638.12m²에 25,173,268천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398,820,532천원임.

【물 품】

(단위 : 개/ 원)

정수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당해연도말 현재액
57종	수량	892	58	69	881
	금액	7,358,085,000	886,410,000	330,956,000	7,913,539,000

- 물품은 전년도말 현재 7,358,085천원으로 당해연도 물품 증감 실적은 신규취득 등이 886,410천원이고 매각·폐기 등이 330,956천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7,913,539천원임.

IV. 검토결과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의 총규모는 420,631백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50,486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71,117백만원임
 세입결산액은 477,191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66,730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10,461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이월금 89,510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28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8,669백만원임.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평균증가율은 세입 10.2%, 세출 7.9%로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2.3%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월금 19.9%, 보조금집행잔액 11.2%, 순세계잉여금 3.9%의 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5년평균 증가율	
세 입(A)	323,745	364,116	432,915	452,468	477,191	10.2%	
세 출(B)	270,277	300,675	353,599	369,565	366,730	7.9%	
잉여금 (A-B)	소 계	53,468	63,441	79,316	82,903	110,461	19.9%
	이월금	36,006	41,448	62,153	50,386	89,510	25.6%
	보 조 금 집행잔액	1,593	1,297	1,909	1,856	2,282	11.2%
	순 세 계 잉 여 금	15,869	20,696	15,254	30,661	18,669	3.9%

2.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의

총규모는 350,417백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76,829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82,16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9,637백만원으로
잉여금은 82,529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이월금 63,108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22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7,193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 ▶ 2015년도 세입결산액은 382,166백만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6.0%인 21,67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주 원인으로
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안정적인 재원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고 판단됨.
- ▶ 세목별로는
지방세 26,813백만원(7.0%), 세외수입 14,645백만원(3.8%)
지방교부세 165,850백만원(43.4%), 조정교부금 7,060백만원(1.8%)
보조금 105,712백만원(27.7%), 지방채 9,000백만원(2.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086백만원(13.9%) 이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세입결산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음.
- ▶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1.4%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8.4%임.
- ▶ 미수납액은 6,184백만원으로, 이중 1,125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05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 ▶ 2015년도 세출결산액은 299,63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5% 지출되었으며, 전년도 결산대비 2.6%인 8,143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 다음연도 이월액은 64,999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2% 수준이며 명시이월 40,144백만원, 사고이월 4,321백만원
계속비이월이 20,53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이월액은 146.1%가 증가 되었음.
- ▶ 예산집행잔액은 12,192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2% 수준이며 전년 대비 15.4%인 2,222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789백만원
예산절감 341백만원, 예산집행잔액 4,949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702백만원, 예비비 2,411백만원임.
- ▶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62,124백만원(20.7%)
사회복지 43,452백만원(14.5%), 국토및지역개발 33,871백만원(11.3%) 등임.

3.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2015년도 평창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의

총규모는 70,214백만원이고, 예산현액은 94,289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5,02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7,093백만원으로
잉여금은 27,932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이월금 26,403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476백만원임.

○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 ▶ 2015년도 세입결산액은 95,02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3%인 3,04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0.8%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8.8%임
- ▶ 미수납액 1,13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 ▶ 2015년도 세출결산액은 67,09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2% 지출되었으며, 전년대비 8.6%인 5,30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 다음연도 이월액은 26,403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8% 수준이며 명시이월 3,803백만원, 사고이월 127백만원, 계속비이월 22,473백만원임.
- ▶ 예산집행잔액은 793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8% 수준이며 전년대비 84.8%인 4,40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4. 재무제표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5년	2,709,978	43,476	2,666,502	350,254	269,581	-80,673
2014년	2,576,237	35,321	2,540,916	340,743	275,077	-65,666
증감	133,741	8,155	125,586	9,511	-5,496	-15,007

순자산은 전년 대비 125,586백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94% 개선되었으며, 총자산은 2,709,97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741백만원(5.2%)가 증가 하였으며, 자산증가 요인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완료에 따른 결과임.

○ 자산 현황을 보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2,576,237	100.00	2,709,978	100.00
유동자산	94,317	3.66	121,515	4.48
투자자산	4,216	0.16	4,306	0.16
일반유형자산	159,467	6.19	159,993	5.91
주민편의시설	236,036	9.16	257,700	9.51
사회기반시설	2,080,800	80.77	2,165,558	79.91
기타비유동자산	1,401	0.07	906	0.04

도로,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79.9%,
 도서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9.5%로
 전체의 89.4%를 차지하고 있음

- 총부채는 43,47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8,155백만원(23.1%)이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유동부채 6,590백만원, 장기차입부채 23,035백만원, 기타비유동부채 13,851백만원임.

< 최근 3년간 부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37,585	100.00	35,321	100.00	43,476	100.00
유동부채	5,424	14.43	5,014	14.2	6,590	15.47
장기차입부채	17,371	46.22	16,253	46.02	23,035	52.79
기타비유동부채	14,790	39.35	14,054	39.78	13,851	31.74

- 재정운영결과 총비용은 269,58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49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운영비 감소가 주 원인이며, 총수익은 350,25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51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최근 3년간 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250,865	100.00	275,077	100.00	269,581	100.00
인건비	45,346	18.08	49,951	18.16	51,224	19.00
운영비	90,979	36.27	102,305	37.19	91,693	34.01
정부간이전비용	8,155	3.25	9,975	3.63	10,996	4.08
민간등이전비용	72,821	29.03	80,517	29.27	83,636	31.02
기타비용	33,565	13.37	32,329	11.75	32,031	11.8

〈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332,061	100	340,743	100	350,254	100
자체조달수익	43,315	13.04	50,045	14.69	48,758	13.93
정부간이전수익	288,335	86.83	290,239	85.18	301,457	86.06
기타수익	411	0.13	459	0.13	39	0.01

5. 종합검토의견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음.

○ 적절한 세입 추계 필요

- ▶ 세입예산 편성시 예년의 징수실적 및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상황,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동사항을 반영한 보다 면밀한 세입예산의 추계와 편성은 필수적이라 할 것임.
- ▶ 그러나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세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16%로 36억원의 초과세입금이 발생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139%를 수납하여 41억원의 초과세입금이 발생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총 77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반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유로 일반회계에서 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적절한 세입추계와 예산편성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음.

< 일반회계 지방세, 세외수입 초과세입금 현황 >

(단위 : 천원)

과 목 별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	실제수납액	초과세입금	비율(%)
합 계	33,744,355	41,457,969	7,713,614	122.9
지방세	23,206,094	26,813,089	3,606,995	115.5
주민세	827,571	1,086,044	258,473	131.2
재산세	10,542,338	11,760,788	1,218,450	111.6
자동차세	4,489,554	4,777,436	287,882	106.4
담배소비세	3,397,561	4,019,576	622,015	118.3
지방소득세	3,499,070	4,587,395	1,088,325	131.1
도시계획세	-	2	2	-
지난년도수입	450,000	581,848	131,848	129.3
세외수입	10,538,261	14,644,880	4,106,619	139.0
국유재산임대료	38,000	61,136	23,136	160.9
공유재산임대료	687,480	446,685	△240,795	65.0
도로사용료	58,480	180,076	121,596	307.9
하천사용료	229,624	307,460	77,836	133.9
시장사용료	3,000	3,306	306	110.2
입장료수입	260,000	368,243	108,243	141.6
기타사용료	210,920	288,852	77,932	136.9
증지수입	183,466	477,287	293,821	260.2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542,000	583,128	41,128	107.6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32,000	9,207	△22,793	28.8
의료사업수입	1,875,000	1,672,845	△202,155	89.2
기타사업수입	129,000	177,382	48,382	137.5
징수교부금수입	1,014,741	955,196	△59,545	94.1
공공예금이자수입	600,000	981,846	381,846	163.6
기타이자수입	20,000	33,180	13,180	165.9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	116,296	116,296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	37,596	37,596	-
자치단체간부담금	780,000	780,000	-	100
일반부담금	232,000	212,436	△19,564	91.6
과징금및이행강제금	46,625	62,257	15,632	133.5
변상금및위약금	5,000	62,716	57,716	1,254.3
과태료	138,240	188,393	50,153	136.3
불용품매각대	20,000	148,413	128,413	742.1
그외수입	3,182,685	6,170,514	2,987,829	193.9
지난연도수입	250,000	320,430	70,430	128.2

○ 세입예산 편성 철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을 포함한 6종의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처리를 한 경우가 15건에 914,490천원에 이르고 있음.

이는 적정한 예산·회계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세입예산 편성없이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한 현황 >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 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비고
합 계	15건	0	0	986,584	914,490	결산서
일반회계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	0	0	116,296	116,296	P43
일반회계	공유재산매각수입금	0	0	37,595	37,595	P43
일반회계	민간융자금회수수입	0	0	352,762	352,762	P45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0	0	1,140	1,140	P332
주택사업특별회계	그외수입	0	0	18,482	18,482	P332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0	0	46,969	46,969	P332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0	202,732	202,732	P348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0	0	2,832	2,832	P358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그외수입	0	0	5,738	5,738	P358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지난연도수입	0	0	56,281	2,757	P358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0	22,393	22,393	P35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0	0	36	36	P368
수질개선특별회계	지난연도수입	0	0	60,362	41,799	P376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그외수입	0	0	7,172	7,165	P392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지난연도수입	0	0	55,794	55,794	P393

○ 예비비 집행 철저

-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임.
- ▶ 마을(소규모) 상수도 가뭄해소 사업은 사전 예측이 가능함에도 이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하고,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처리한 것은 예비비 편성 및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 예비비 집행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지출 결정액 (결정일)	지출액	이월액	예비비지출 사유
상하수도 사업소	마을(소규모) 상수도 가뭄해소	300,000 (15.11.25)	-	300,000	가뭄지속화에 따른 마을상수도 급수지역 식수난 예상 취수원 확보

○ 다음연도 이월예산 과다 발생

- ▶ 지방재정법 제59조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나,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함에도
2015회계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81%인 40,916백만원이 증가한 총 215건 91,402백만원으로 확인되었음.
-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다한 이월사업의 발생은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건전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이 미흡한 원인분석과 문제점의 해결 노력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 예산 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년	134	50,486	84	18,984	28	4,242	22	27,260
2015년	215	91,402	153	43,948	34	4,448	28	43,006
증 감	81	40,916	69	24,964	6	206	6	15,746

※ 201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P391 참조

○ 세출집행잔액(불용액) 원인분석 확행 및 예산반영 철저

-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2,19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2%임.
- ▶ 불용액 현황을 보면 예산집행잔액 4,242백만원(40.6%)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789백만원(22.9%), 예비비 집행잔액 2,411백만원(19.8%) 순임.
- ▶ 예산편성시 당해연도 집행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소요예산 산출과 집행시기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사업이 급증한 것은 계획성 없는 사업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신중하고 정확한 예산편성 및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집행잔액	원인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4년	14,414	542	2,500	8,456	2,916	
2015년	12,192	2,789	341	4,949	1,702	2,411

<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60,974	52,767	4,928	3,279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	3,793	41	3,345	407
대관령 관광특구 활성화사업(행사운영)	400	91	81	228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2,086	1,906		180
공무원 보수	27,411	27,152		259
공무원 연금부담금	5,269	4,928		341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856	746		110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 지원 전출금	5,293	5,000		293
도시계획도로개설(도비)	225	42		183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1,135	972		163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	382	273		109
살처분 보상금 지원	150			150
내수면 개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193			193
유기질 비료지원	4,720	4,312		408
균유재산 부지매입	9,061	7,304	1,502	255

- 이 밖에도 결산검사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지방 채무·채권 경감으로 지방 부채 최소화, 공유재산 대부료 및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관리 철저 등 분야별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세출예산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결산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형식적인 의미 뿐 아니라 정책의 환류과정에서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해 정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토대가 되고 향후 예산편성 심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확인자료가 되는 만큼 신중하고도 면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V. 참고자료(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